###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4723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 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	②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			
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교육과정</u> 을 1년 이상 운영하	3. <u>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u> -		
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